

특별자치도법, 강원도 시대정신·미래 담아내야



박종홍 | 강원일보 오피니언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올해 6월11일 새로 태어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최양희 한림대총장은 김진태 지사와의 본보 신년 대담에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강원도민의 염원이 가져온 기회로 정의했다.

그렇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간 희생을 강요받으며 변방으로 전락했던 강원도가 지역 발전의 희망을 품게 된 변화의 단초다.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나 대한민국, 동부아시아의 중심지로 나아가는 포부를 펼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다.

강원도는 내달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달에는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은 181개 조항에 대한 토론회 등 공론화 작업을 하고 19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중앙 부서와 사전에 조율할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거기에 내용을 채워 넣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고 했다. 무엇을 담아야 할까. 현재 도가 준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 완화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사가 규제를 풀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2중, 3중, 4중으로 돼 있던 규제를 해제해 나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입법방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이제는 경쟁

제주, 세종시, 강원, 전북에 이어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충북은 특별자치도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권에서도 김두관 의원 등 18명이 ‘부산·울산·경남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자치도 설립이 이어지면서 특별자치도 본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특별법을 살펴보면 강원특별법과 거의 모든 조항이 동일한 사실상 쌍둥이 법안이나 다름없다. 다른 지역의 법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특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경쟁관계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자치도가 많이 설치되면 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은 사라지고 정치논리에 따른 ‘나눠주기’에 불과한 결과물로 전락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개정안이 더 특별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지방자치가 지역에 미친 영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후 개혁정책에 의해 새롭게 시작된 일본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정치사회화와 시민민주주의의 발달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성장위주·개발위주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삶의 질이 우선되는 복지정책으로 국가정책전환을 요청하는 단계로까지 성장했다.

또한 도시문제나 공해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의 주민의 정치참여는 차후 물합리한 정부정책에 대한 주민통제의 선례가 되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제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의 주역은 지방정부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지방자치 단체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자치체 운영방식의 도입을 촉진케 했다. 시대정신이 반영된 특별자치도 전략의 수립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지방자치와는 다르지만 조선시대에는 면, 리를 단위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을 다스리는 마을의 자치 규약이 있었다. ‘향약’이다.

특성에 맞게 그 지역을 다스리는 마을의 자치 규약이 있었다. ‘향약’이다. 향약에는 마을의 구성원들이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잘못은 서로 일깨워주며, 예절로써 서로 사귀고, 어려운 일은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네 가지 덕목은 상부상조의 협동 정신을 일깨우고 모두가 행복한 지역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향약이 추구했던 가치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구상·전략 꼼꼼히 준비해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에는 많은 제주도민들이 기대와 설렘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5년이 흐른 지금 성과도 있지만 그 때의 분위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일부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그 가치가 퇴색되고 있는 원인으로 새로운 특별자치도를 위한 구상과 전략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는 자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강원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역사에 있어 소중한 성과이자 계속 이어져야 할 자산이다. 꼼꼼하게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미래의 강원도를 만들 내용으로 개정안을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정책제언 II

고향사랑기부제 대장정 되기를



박 현 갑 | 서울신문 오피니언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바로 고향이다. 가족, 이웃과 어울려 지내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간이다. 타향살이, 귀향, 향수 등 고향과 관련된 수많은 말에서 드러나듯 한국인에게 고향은 뱃속 깊이 박힌 본질적 정서라 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러한 감성적 애향심에 기댄 정책이다. 정부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도입했다.

기부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라면 어떤 곳이든 관계없다. 기부 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정부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 준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준다.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일본의 '고향납세제'가 모태다.

고향사랑기부제 출발은 순조롭다. 유명 인사의 동참에다 답례품 때문이다. 촉구 스타 손흥민과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동참했다. 모두 자신들의 고향에 기부했다. 이 밖에 김동연 경기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단체장도 가세했다.

일반인들의 관심을 끄는 건 지자체 답례품이다. 고향사랑기부 사이트에 등록된 답례품은 8일 현재 5000개. 4000개가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며 나머지는 생활용품과 지역상품권이다. 먹거리 외에 요트 탑승권(강원 속초), 해상펜션(경남 사천), 반딧불이 신비탐사(전북 무주) 등 체험형 상품도 눈길을 끈다.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 데이트권'(전남 영암군) 등의 상품은 출시하자마자 품절됐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높은 관심은 바람직하지만 지역 자생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을 게다. 특정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충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기부자의 지역 선택이 지자체의 재정력과 무관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민의 기부로 공공서비스를 하는 것이 돼 지방분권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과 관계없이 기부할 수 있어 답례품 중심으로 기부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도시 의존성을 줄이고, 지역 자생력을 키울 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서울신문 오피니언_박현갑 논설위원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자급률·농식품 수출은 올리고! 유통비용·농가 경영부담은 낮추고!

- 식량자급률 상승 전환, 농식품 수출 100억 불,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구축, 온라인거래소 출범 등 2023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보고-

-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농가경영안전망,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의 4대 정책목표 달성을 주력
-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로 하락하기만 하던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
 - 전략작물직물제 도입(1,121억 원), 가루쌀 생산확대(전문생산단지 39개소 신규지정) 및 식품업계와 협업하여 소비기반 구축
 - 해외 곡물유통망 1곳 추가 확보(누계 3곳)를 위해 500억원 규모 신규 투자
- 농식품 수출 100억 불 달성 및 스마트팜 등 K-농업 해외진출 전방위 지원
 - 딸기 수출업체(50여개) 공동물류, 해외 냉장 유통(콜드체인) 허브 확보(네덜란드, 싱가포르 추가), 한류와 연계한 '한식 글로벌 브랜딩' 전략 추진
 -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거점 확대(베트남, 카자흐스탄 → 호주, 중동),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구축 및 동남아 중고 농기계 등 ODA·농업기술 지원 확대
- 전국단위 농산물 '온라인 가락시장' 출범 및 농가 경영안정 지원 강화
 -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출범('23.12월)으로 유통단계 대폭 축소 기대
 - * 거래소 유통 물량 목표 : ('23) 8만 톤(주요 품목 도매거래량의 2%) → ('27) 80(20)
 - 정책자금 상환유예(9,800억 원), 비료(2,700억 원), 사료(1조 원, 1.8%) 등
-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으로 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사회서비스 강화
 - 농촌 재구조화 기본방침(국가)·기본계획 수립(지자체) 및 정부-지자체 간 협약 확대('22: 32개시군 → '23: 53)·통합지원, 고령자대상농촌돌봄마을신규조성(3곳)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만들기 위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신설로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본격화

- 장애인건강과 현판식 개최(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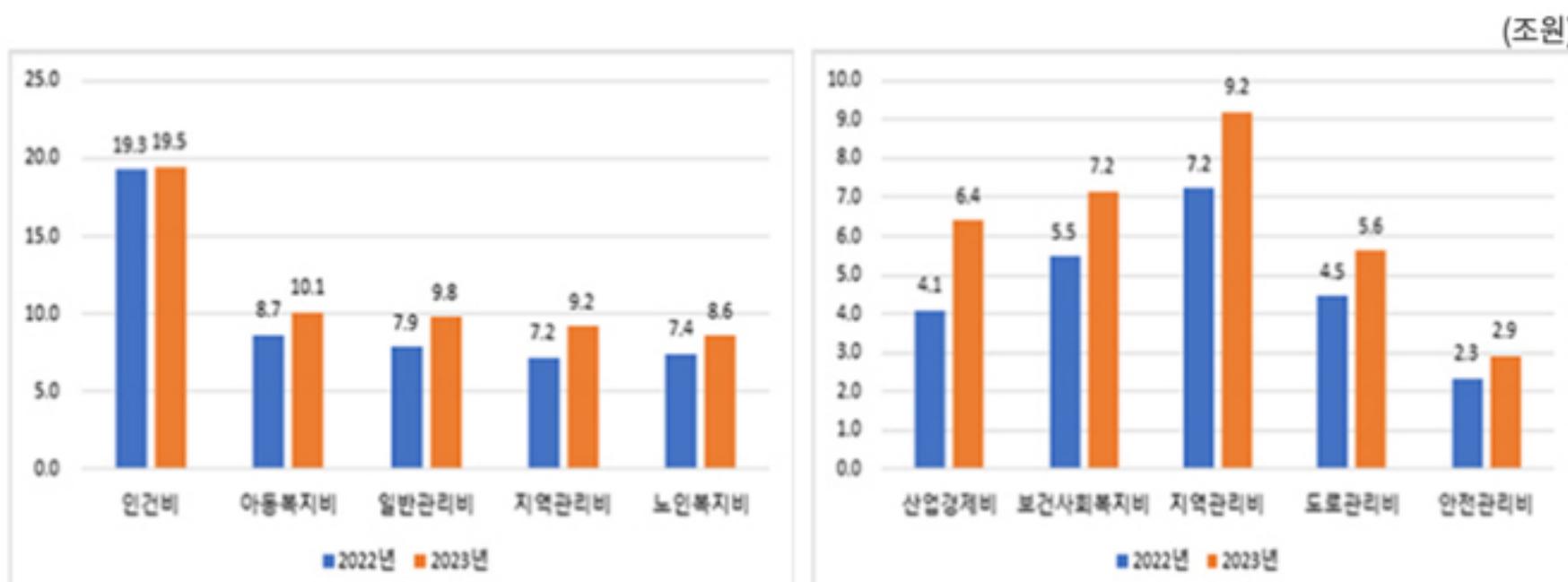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022년 12월 29일(목) 자로 신설된 「장애인 건강과」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한 현판식을 1월 4일(수) 오후 3시 30분에 열고, 장애인 건강 정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건강과」에서는 지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7.12월 시행)에 따른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전달체계를 구축·관리한다.
 - 또한 재활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장애인 재활·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비지원 등 장애인 건강 관련 복지·보건 사업을 통합적으로 전담하게 된다.
- 이기일 제1차관은 "장애인 건강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장애인 보건과 복지 정책을 연계하는 등 조직 역량 강화를 기대하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업무를 수행할 장애인건강과의 앞으로 행보를 응원한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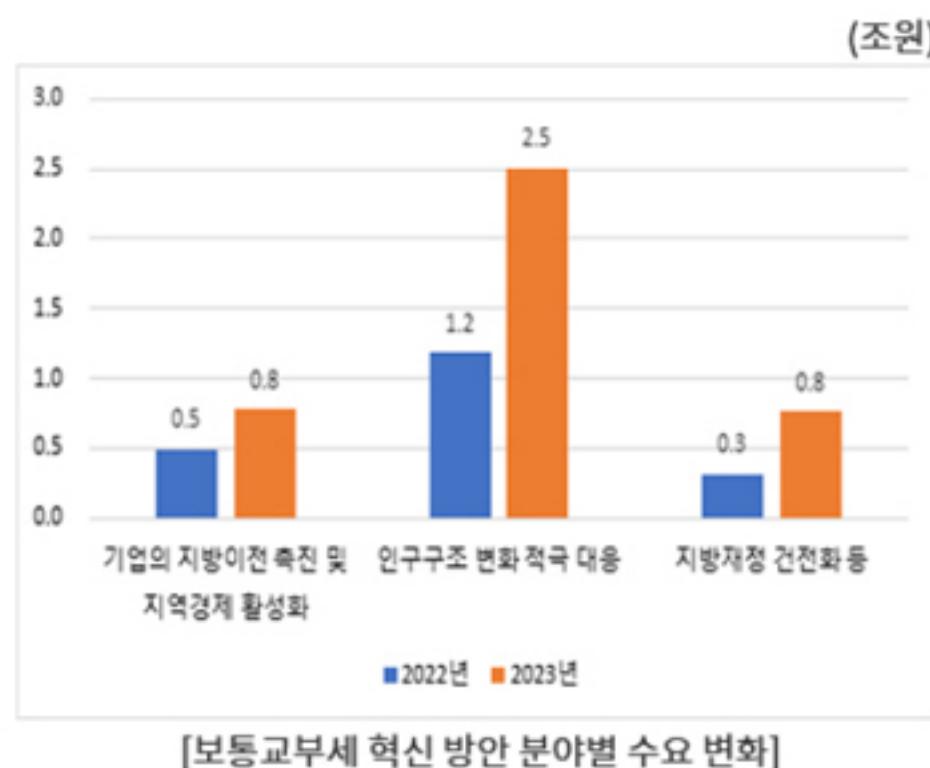
전 국민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부세 지원

- 2023년 보통교부세 66.6조원 전국 자치단체별 교부액 확정 배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2월 30일 2023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66.6조원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액을 확정하고 전국 170개 자치단체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방세 등 자체수입만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자치단체를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한 재원인 기준재정수요액(이하 수요)과 예상되는 세입인 기준재정수입액(이하 수입)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한다.
 - 수요는 인구, 산업단지 면적, 합계출산율 등 공식 통계를 활용하여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수입은 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총 수요는 147.8조원*으로 전년대비 18.1% 증가하였다.
 - * 2023년 불교부단체(서울본청, 경기본청, 성남시, 화성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 주요 수요는 규모별로 인건비 19.3조원, 아동복지비 10.1조원, 일반관리비 9.8조원, 지역관리비 9.2조원, 노인복지비 8.6조원 순이다.
 - 2022년 대비 주요 수요 증감률을 보면 산업경제비는 56.6%(+2.3조원), 보건사회복지비는 30.5%(+1.7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이러한 수요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됨에 따라 2023년 자치단체는 영아수당 등 아동 지원, 노인 지원, 지역산업 지원, 감염병 대응, 지역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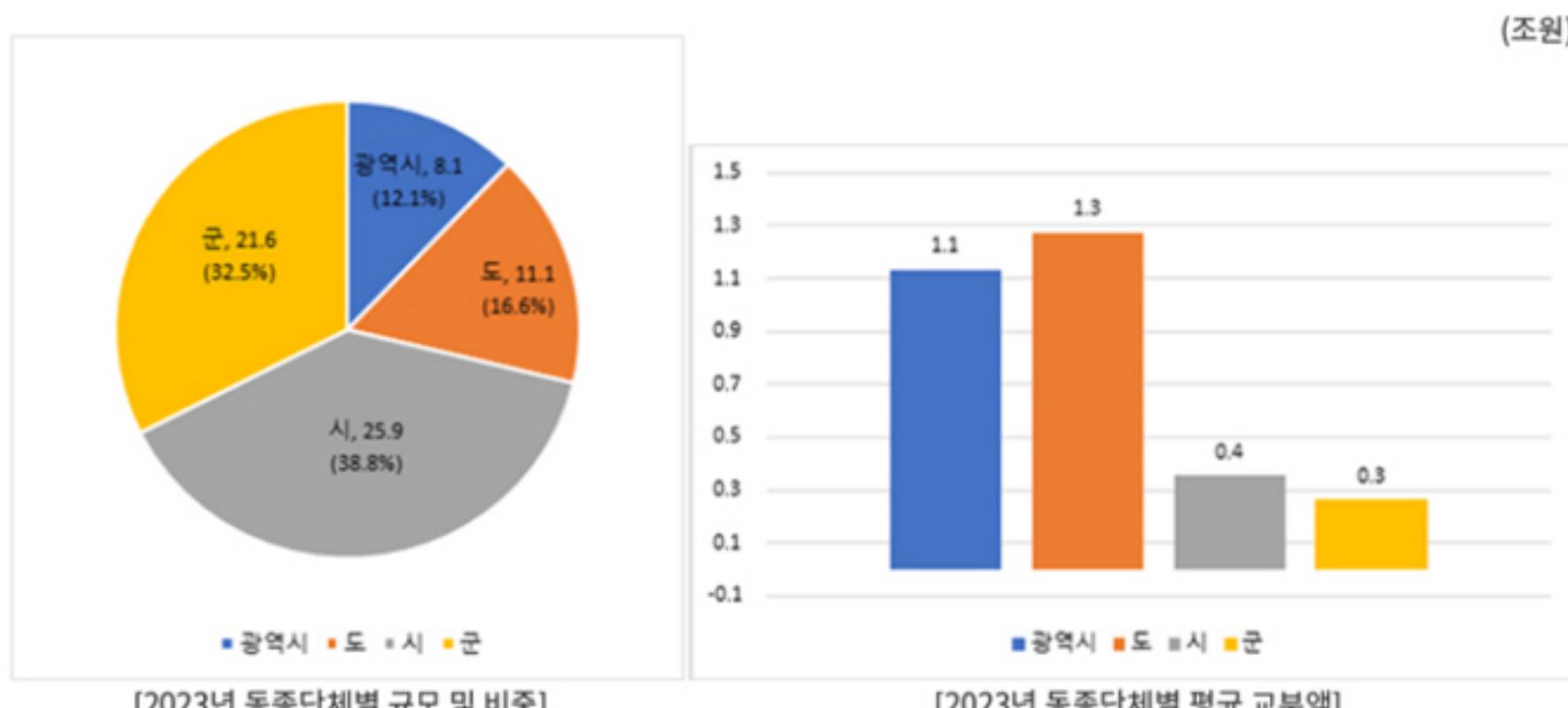


- 수입 측면으로는 부동산 거래 위축, 경기 둔화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광역시 등에 보통교부세가 더 보충된다.
 - 아울러, 2022년에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았던 수원, 용인, 이천, 하남시 4개 자치단체에도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데, 이는 반도체 산업의 위축 등으로 지방세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자치단체는 2022년 166개에서 2023년 170개로 증가한다.
- 이번 산정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보통교부세 혁신방안' (2022년 10월 발표)이 반영되었다.
 -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12.30.)
 -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선 및 소상공원 지원 등에 0.3조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저출산 개선 등에 1.3조원의 수요를 추가 반영하였다.
 - 또한, 자치단체 간 시설의 공동 활용 등으로 지출을 효율화하거나 인건비 절감 등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노력하는 자치단체는 0.5조원의 특전(인센티브)을 반영하였다.



□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배분 결과를 보면 시 25.9조원(38.8%), 군 21.6조원(32.5%), 도 11.1조원(16.6%), 광역시 8.1조원(12.1%)으로 배분되었다.

-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 교부액은 도 1.3조원, 광역시 1.1조원, 시 0.4조원, 군 0.3조원 수준이다.



-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별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활용하게 되며, 상세한 산정내역은 2023년 2월말 '지방재정 365'에 공개할 예정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통교부세는 전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다”라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성장동력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방의회의원 공제회 도입 가능성 검토



홍근석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

I. 논의 배경

■ 지방의회의원 공제제도 도입 필요성

- 지방의회의원의 입법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신분보장과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 제도가 필요함
 -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주요 구성원이며, 지역사회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에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방의회의원이 갖는 신분상 특수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은 제한적인 수준임
 -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에 의한 선출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공무원연금법」 상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함
 - 지방의회의원에게 제공되는 의정활동비, 의정수당, 여비 등은 4년 임기 동안에만 보장되는 한시적 혜택이며, 지방의회 의원은 퇴직 후 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함
- 지방의회의원의 실질적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이 필요함
 - 지방의회의원의 실질적인 복리후생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정활동 성과만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의 많은 부분이 지방의회의원 개인부담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경제적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제한됨
- 지방의회의원 활동에 대한 간접적 위험분산 수단으로서 공제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수당중심 보상체계, 임기 제한성, 실질적 복지제도 부재 등 지방의회의원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방의회의원 공제제도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의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장기적으로는 의정활동의 질적 개선 및 지역주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음

II. 국내·외 사례

1. 국내 사례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1952년 대한지방행정협회로 출발하였으며, 1990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이 제정되면서 민법상의 사단법인에서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됨
 - 공제회비는 회원부담금과 사업이익금으로 운영되며, 주요사업은 회원을 대상으로 한 급여사업·대여사업과 기금조성을 위한 개발사업·금융사업·문화사업 등으로 구분됨
- 퇴직급여는 회원이 퇴직을 대비하여 지급되는 맞춤형 장기제도로 퇴직 시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고 퇴직 후 급여를 생활안정을 보장·지원하는 제도임
 - 퇴직급여는 회원이 공무원 퇴직 시 청구에 의해 지급받는 급여로 청구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가 상이함

• [표 1]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퇴직급여 유형 •

구분	퇴직급여	탈퇴급여(중도해지)
청구사유	공무원 퇴직으로 인한 청구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해임, 파면, 사망 등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재직 중 중도해지가 필요한 경우
급여금 지급	납입원금 + 이자 100%	1. 가입기간 20년 경과 : 납입원금 + 이자 100% 2. 그 외 가입기간별 : 납입원금 + 이자 0~70%
재가입 여부	재가입 불가 (재임용시 가능)	재가입 가능

- 사망급여금, 가족사망급여금, 요양급여금, 재해급여금, 출산장려금, 혼인급여금 등 다양한 형태의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잦은 이동, 수주생산, 중층적 하도급구조, 불안정한 사업장 등 건설근로자들의 기존 사회보험체계로부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를 도모하고 건설업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6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거쳐 1997년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란 명칭으로 설립되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임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됨
- 단체보험, 건강검진, 취학자녀 지원, 휴가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표 2]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서비스 유형 •

구분	지급기준
단체보험	무료 의료실비보험 가입
건강검진	MRI, CT 등을 포함한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결혼·출산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	결혼 지원금 50만원, 출산 지원금 30~70만원, 유산 위로금 30만원 지급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복지포인트 20만점 지급
휴가 지원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국내 관광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제공(40~70만원)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금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 100만원 지원(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협성장학금	대학생 자녀에게 졸업시까지 등록금과 학습 보조비 50만원 지원 (국가장학금 수령 시 차액만큼 지원)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온라인 강의 수강권지원
정부포상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
사진·영상 공모전	건설근로자를 주제로 총액 1천만원 규모의 공모전 개최
자녀 진로캠프	한국잡월드와의 협업을 통해 예비중학생 진로 탐색 프로그램 제공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https://wedi.cw.or.kr>)

2. 해외 사례

■ 미국 주정부

- 미국은 주정부별로 지방의원 대상 연금 운용 여부가 다름
 - 2021년 기준 9개 주는 지방의원 대상 연금이 없으며, 지방의원 대상 연금이 있는 41개 주 중에서 19개 주는 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임
 - 24개 주는 지방의원 대상 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3개 주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주정부별로 고용주와 사용자의 납입분 기준이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고용주는 0~15.75%, 사용자는 0~15% 사이임
 - 일부 주의 경우 보수의 일정비율로 납입하기보다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뉴멕시코주는 연간 600달러를 납입함)
 - 수령조건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나이(55-65세)와 재직기간(최소 5년)의 제한을 두

• [표 3] 미국 주정부의 지방의원 대상 연금 현황 •

구분	주(State)	
연금 있음 (41)	선택 (7) 의무 (6)	조지아, 하와이, 일리노이, 캔터키, 뉴멕시코, 텍사스, 유타 인디애나, 메릴랜드, 미주리,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선택 (14) 의무 (10)	알래스카, 아이오와, 미시간, 몬태나, 뉴욕, 오하이오, 오리건, 펜실베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캔스اس, 와이오밍 콜로라도, 코네티컷, 아이아호, 메인,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미시시피, 뉴저지, 버지니아, 위스콘신
	선택 (1)	플로리다
	의무 (3)	아리조나, 아칸소*, 텔라웨어

-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2012년 이전 당선된 의원에게는 의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 아칸소주의 경우 2003년 이전, 델라웨어주는 2012년 이전까지는 선택이었음
- 버몬트주의 경우 deferred compensation plan(이연보상제도) 참여 가능함
- 인디아나주의 Legislative Retirement System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System)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System)으로 구분됨
 - 모두 Indiana Public Retirement System(INPRS)에서 관리하며,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표 4] 인디아나주 Legislative Retirement System •

구분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System)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System)
관리기관		Indiana Public Retirement System(INPRS)	
가입기준		1989년 4월 30일 이전 당선	
기여/ 납입	사용자 (Employee)	-	급여의 5%
	고용자 (Employer)	-	NPRS 이사회에서 결정한 비율(예산당국 승인) × 해당 연도의 급여
수령조건		65세, 10년 재직/ 60세, 15년 재직/ 55세, 재직기간 + 나이 = 최소 85세	퇴직 이후 아무때나 인출 가능
수령금액		\$40 × 재직기간 (1989년 11월 8월 이전까지), (월별 지급) 또는 3년 연속 급여가 가장 높았던 때의 급여 평균의 1/12 중 작은 금액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일시불, 분할, 대출 등)
특이사항		-	사용자가 자기주도적 투자를 통해 계정을 능동적으로 관리 가능함

■ 호주 주정부

- 호주의 경우 모든 주와 준주정부에서 의원 대상 연금제도를 운영중이며, 초선의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2004년 이전 당선된 의원은 급여확정형 연금(Defined Benefit Scheme)에 가입했으나, 2004년 연금개혁으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어 2004년 이후에 당선된 의원은 적립식연금(Accumulation Scheme)에 가입해야 함

• [표 5] 호주 주정부의 지방의원 대상 연금 현황 •

구분	근거법안	최소 연금기여분 (\$)*	의무납입분/기여분(%)		
			고용주	사용자	비고
빅토리아(VIC)	Parliamentary Salaries, Allowances and Superannuation Act 1968	28,274	15.5	-	연금보장률*SG(9.5%) + 6%
뉴사우스웨일스 (NSW)	Parliamentary Remuneration Act 1989	21,694	9.5	-	연방정부법 상 소득상한 또는 (보수 + 수당 + 자발적기여분) 중 높은 금액
퀸스랜드(QLD)	Superannuation(State Public Sector) Act 1990	20,288	12.75	5	
남호주(SA)	Parliamentary Superannuation Act 1974	30,896	15.4	-	디폴트 펀드(Default Fund) 외 다른 펀드로 옮길시, 기본 SG 적용
서호주(WA)	Parliamentary Superannuation Act 1970	24,107	15.4	-	
타スマ니아(TAS)	Parliamentary Salaries, Allowances and Superannuation Act 2012	13,318	9.5	-	
노던 준주(NT)	Legislative Assembly Members'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Act 2004	15,456	9.5	-	9% 또는 SG 중 높은 보장
호주 수도 준주 (ACT)	Legislative Assembly (Members' Superannuation) Act 1991	23,589	14	-	MP가 3% 이상을 기여하면, ACT 정부가 월급의 1% 추가 기여

- 최소연금기여분(\$) 및 기여분(%)은 2020년 3월 기준임
- 연금보장률은 고정기여분으로, 매년 0.5%씩 증가하여 2025/26년 회계연도 12.5%까지 도달함
- 재정착수당(Resettlement Allowance)은 신분상 퇴직한 의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수당으로, 뉴사우스웨일즈와 타スマ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주 및 준주정부에서 지급함

• [표 6] 호주 주정부의 재정착수당 •

구분	명칭	자격조건	지급금액
빅토리아(VIC)	Separation Payment	- 의회 확정급여제도의 구성원이 아니며, - 부패행위나 고의적 직무위반으로 의회를 떠나거나 사망한 의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으며, - 같은 임기 또는 의원직을 상실한 총선 후 임기에 국회에 복귀한 MP는 수당을 상환해야 함	1 Term - 3개월 기본급여 2 Term 이상 - 6개월 기본급여
퀸스랜드(QLD)	Transition Allowance	- 경선에서 떨어지거나 재선 실패로 의회를 떠나고, - 퇴직 직후 의원직과 관련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안 된 MP	14년 이전 당선 - 6주 기본급여 14년 이후 당선 - 12주 기본급여
남호주(SA)	Involuntary retirement payment	- 비자발적으로 은퇴한 MP (다른 관할구역 의회에 선출된 경우를 제외)	12주 기본급여
서호주(WA)	Transition Allowance	- 퇴직의원 중 의회연금제도 연금을 받지 않는 MP - 의원 당 한 번만 지급됨	1 Term - 3개월 기본급여 2 Term - 6개월 기본급여 3 Term 이상 - 9개월 기본급여
노던준주(NT)	Resettlement Allowance	- 2005년 선거 이후 당선되었고, 퇴직 이후 의원직과 관련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안 된 MP - 연방의회 입후보하고 당선이 된 MP는 자격 없음	근속기간 1년당 1개월 기본급여, 최소 4개월~최대 12개월
호주수도준주 (ACT)	Resettlement Allowance	- 의원직에서 은퇴, 또는 사임한 모든 MP	근속기간 1년당 2주 기본급여 및 마지막 근속연도 이후 근속월 비례지급, 최대 12개월 기본급여

III. 추진 방향

■ 기본방향

•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방의회의원 공제제도는 자율적인 각출제, 확정각출형 연금제도로 규정할 수 있음
- 각출은 연봉의 10% 정도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 범위내에서 매칭형으로 동반 각출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 기금 운용의 자율성 담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공제회 기금 운용은 공제회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금 사업 이외에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예를 들면 민간 카드사와 제휴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의원공제카드를 발행하여 지출금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음

• 퇴직 후 소득보장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퇴직급여액 설정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퇴직 후 소득보장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액은 기금운용 수익률과 사업수익에 따라 최저연봉을 기준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급여는 물가와 연동되도록 설계할 수 있음
- 지방의회의원 공제제도만으로는 안정적 노후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준의 의원연금 도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전체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공제회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방의회의원 공제제도가 위험분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원 수 확보가 필요함
- 2022년 기준 시도의회의원 779명, 시군구의회의원 2,601명, 광역의원비례대표 93명, 기초의원비례대표 386명 등 총 3,859명임
- 따라서 단일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하기보다는 전체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공제회 설립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현직 지방의회의원뿐만 아니라 전직 지방의회의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도입 방안

• 최초순 외(2015)의 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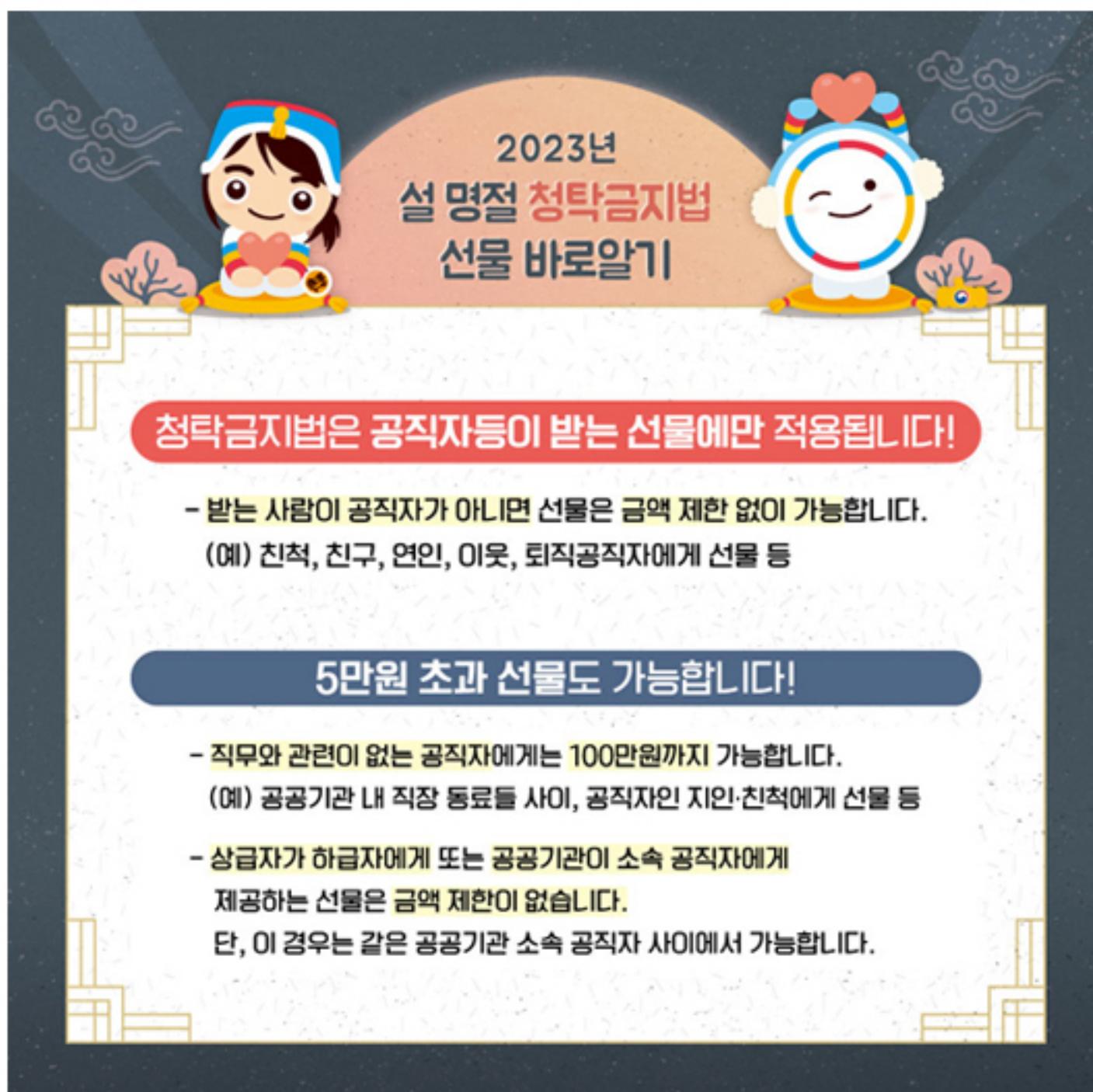
알기쉬운 정책용어

• [표 7] 지방의회의원 공제회 도입 방안 •

구분	제 1안 지방의회의원 상조회 확대	제 2안 일부 지방의회 조례 제정	제 3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연계	제 4안 지방의회의원공제회 범제정
규모의 경제 (회원 규모) 주체	×	×	○	○
제도 적용의 합리성	△	△	△	△
제도 도입의 실현 가능성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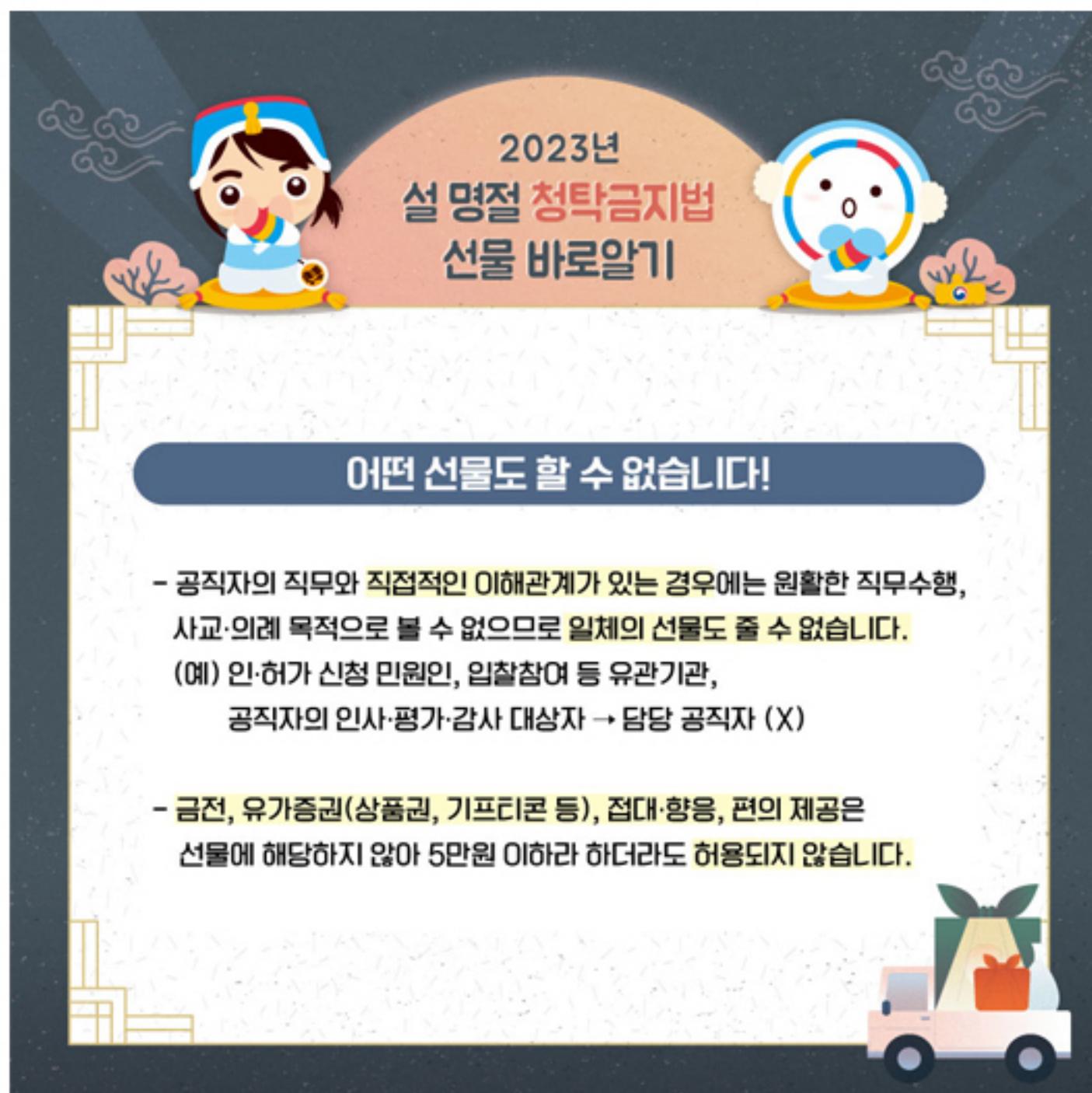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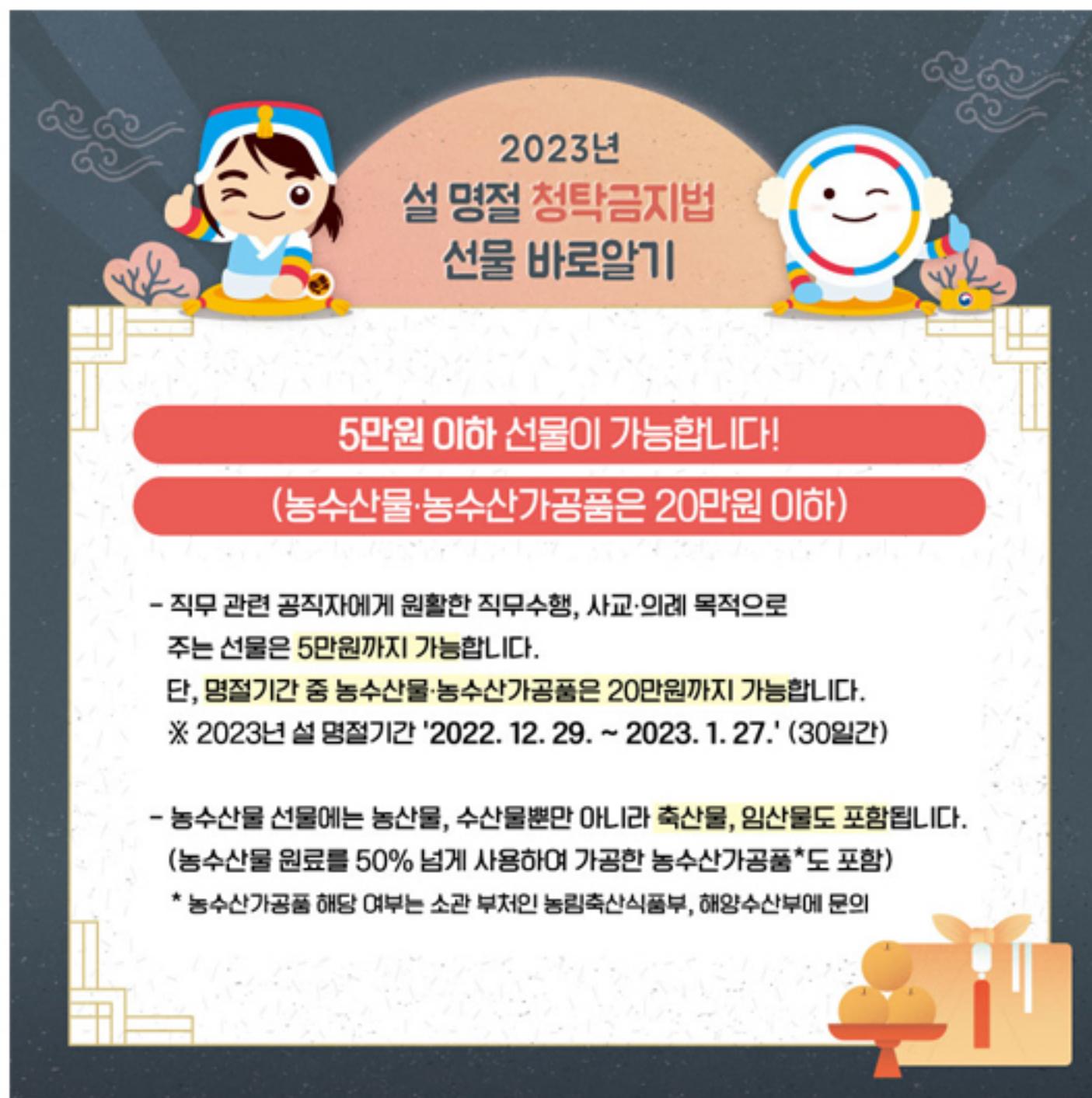
출처: 최조순 외(2015).

알기쉬운 정책용어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알기쉬운 정책용어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알기쉬운 정책용어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